

# 리비아 (Libya)

## ◎ 주요 변동사항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7  | 2019   | 비 고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|
| 사회보험<br>당연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 | 리비아 거주자   | 리비아 거주자  | -        |
| 보험료율<br>(근로자 / 자영자 /<br>사용자 / 정부) | 3.75% / 15.675% / 10.5% /<br>0.75% 또는 0.82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75% / 15.675% / 10.5% /<br>0.75% 또는 0.825%   | -        |
| 보험료 부과<br>상한 / 하한 소득              | 대통령 기본급 / 450 dinars  | 대통령 기본급 / 450 dinars   | -        |
| 연금수급 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남자 65세, 여자 60세, 공무원<br>62세, 위험직종 종사자 60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남자 65세, 여자 60세, 공무원<br>62세, 위험직종 종사자 60세   | -        |
| 노령연금 지급률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초 가입기간 20년에 대해<br>1년 당 최종 3년간 평균<br>소득의 2.5% + 20년 초과<br>기간마다 1년 당 2% 증액 | 최초 가입기간 20년에 대해<br>1년 당 최종 3년간 평균<br>소득의 2.5%(일부 법관 3.5%)<br>+ 20년 초과 기간마다 1년 당<br>2% 증액 | 산식 일부 변경 |
| 일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망보조금 50 dinars   | 사망보조금 50 dinars  | -        |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7년
- 현행법 : 1957년(퇴직), 1958년(사회보험), 1980년(사회보장, 1981년 시행), 1985년(최소연금), 1987년(장애)

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## 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리비아 거주자

- 근로자 : 월 소득의 3.75%
 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은 450 dinars
  -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은 대통령 기본급
  - 근로자 납부 보험료는 현금 질병급여, 임신급여, 출산일시금, 의료급여 및 산재급여의 재원이 됨
- 자영자 : 신고소득의 15.675%
 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은 450 dinars
  -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은 대통령 기본급
  - 자영자 및 정부 납부 보험료는 현금 질병급여, 임신급여 및 출산일시금 일부의 재원이 되고, 의료급여 및 산재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됨
- 사용자 : 임금지급액의 10.5%(외국기업 사용자는 11.25%)
 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은 450 dinars
  -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은 대통령 기본급
  - 사용자 납부 보험료는 현금 질병급여, 임신급여, 출산일시금, 의료급여 및 산재급여의 재원이 됨
- 정부 : 근로자 가입소득의 0.75%, 자영자 가입소득의 0.825% (외국기업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없음) 부담, 연간 보조금 지급 및 사용자로서 기여
  - 정부 납부 보험료는 현금 질병급여, 임신급여, 출산일시금, 의료급여 및 산재급여의 재원이 됨

- 노령연금
  - 남자 65세, 여자 60세, 공무원 62세, 위험 또는 유해 직종 종사자 60세
  - 고용관계 종료(퇴직) 필수
  - 연금은 연기될 수 있음
  - 피부양 보충수당 : 무직의 부인 및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지급 (미혼 딸은 연령제한 없음)
  - 급여 국외 지급 불가
- 장애연금
  - 최소 60% 이상의 장애 판정
  - 상시간병수당 : 가입자가 실명, 사지마비, 혹은 이동능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에서 상시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
  - 피부양 보충수당 : 무직의 부인 및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지급 (미혼 딸은 연령제한 없음)
  - 급여 국외 지급 불가

- 유족연금
  - 유족연금
    - 가입자가 사망 당시 노령이나 장애연금 수급자이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경우
    - 수급권 있는 유족은 무직의 배우자, 무직의 미혼 아들(수료 중인 학사과정에 따라 최고 28세까지), 미혼이나 이혼 또는 미망인이 된 딸(혼인 또는 재혼 시 급여 중단), 소득이 없는 부모, 또는 사망자가 자녀가 없는 경우 피부양 형제자매
    - 급여 국외 지급 불가
  - 사망보조금
    - 가입자가 사망 당시 노령이나 장애연금 수급자이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

## 6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연금
  - 최초 20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납부기간 1년 당 최종 3년간 평균소득의 2.5%(일부 법관은 3.5%) + 20년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1년 당 2%씩 증액
  - 최저연금액은 법정최저임금(450 dinars)의 80%
  - 최고연금액 : 최종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(경찰 및 일부 법관은 최종 월 소득)의 80%
  - 피부양자 보충수당 : 수급권 있는 부인에 대해서는 월 150 dinars, 수급권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00 dinars
  - 급여 조정 : 공무원 임금 변동에 연동하여 조정
- 장애연금
  - 60% 이상 장애로 판정된 경우, 가입자가 수급하고 있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연금의 50%에 보험료 납부기간 중 처음 20년에 대하여 1년당 0.5%씩, 그리고 20년을 초과하는 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2%씩 추가하여 지급
  - 최저연금액 : 가입자 최종 소득의 50% + 최저노령연금액(450 dinars)
  - 최고연금액 : 가입자 최종 월 소득의 80%
  - 상시간병수당 : 장애연금액의 25%까지 지급
  - 급여 조정 : 공무원 임금 변동에 연동하여 조정
- 유족연금
  - 유족연금
    - 사망자의 가족 수 및 생계유지 관계에 의해 결정됨
    - 유족 배우자에게는 사망자가 수급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의 40%~75%, 한명의 고아에게는 40%~75%(두 명 이상일 경우 100% 까지), 부모 및 형제자매에게는 15~60% 지급
    - 급여 조정 : 공무원 임금 변동에 연동하여 조정
  - 사망보조금 : 50 dinars를 일시금으로 지급

- 노동사회부(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)
  - 전반적 관리·감독
  
- 사회보장기금(Social Security Fund)
  - 보험료 징수 및 지사 및 지역사무소 등을 통한제도 운영

<2019년 ISSA 자료>